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. 2. 1 선고 2022가단432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1. 18.

판 결 선 고 2023. 2. 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18. 4. 1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8. 4. 16. 접수 제7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D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1999. 5. 13. 670만 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

나. 원고는 2009. 4. 16.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,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.

다.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65303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. 8. 11. 위 법원으로부터 ‘C은 원고에게 6,086,592원 및 그 중 5,930,736원에 대하여 2000. 12. 20.부터 지급명령의 송달일까지는 연 1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라. C의 모 F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는 2005. 7. 30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, G, C, H, I이 있었다.

마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은 위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이다.

바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. 4. 13.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의 정리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의 사망일인 무렵인 2005. 7. 30.경 있었다.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(1)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

행사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,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73138, 73145 판결 등 참조)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).

(2) 구체적 판단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2018. 4. 13.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실에 다툼이 없고,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다.

그러나 한편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망인은 2005. 7. 30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18. 4. 13. 작성되었는데, 망인 사망 후 약 13년이 경과한 2018년에 이르러서야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,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“2005년 7월 30.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”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. 7. 3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기에,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,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1995년 무렵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, 당시 댐건설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고,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건축 등을 위한 대출금을 피고가 모두 변제한 사정,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,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건물 부분은 피고가 건축을 하면서도 그 명의를 망인에게 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건물을 건축하였던 건설업자나 피고의 동생들도 이주할 장소나 건설 등을 모두 피고가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, ④ 피고는 망인과 함께 보령시 J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이주하여 사망시점까지 망인을 돌보았는데, 피고의 형제들은 망인을 돌본 피고의 기여도, 이주 및 건축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

협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상속재산분할협약서가 작성된 2018. 4. 13.경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일인 2005. 7. 30.경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의 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일인 2005. 7. 30.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민철

별지